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10. .
발 의 자	김정곤의원 외 4명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10.

발 의 자 : 김정곤, 김상조, 안장환, 윤종호, 정근수 의원
(5명)

1. 제안이유

미래를 선도해나갈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 “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국방·자동차·건설기계·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 관련 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탄소산업의 육성) 시장은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경상북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산업 업무담당 국장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탄소산업 관련 기관·단체·법인·기업의 임직원
4. 탄소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탄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에 따른 세출발생(안 제6조)
-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안 제6조)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안 제7조)

3. 미첨부 사유

-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안 제6조)
-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7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4,800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	100,000원×12명×4회	4,8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과학경제과 탄소산업계 이 현 경 (054-480-6163)